

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66
----------	------

2021년 3월 3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2월 5일, 문장길 의원
2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3. 상정일자
 - 제29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
(2021년 3월 3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문장길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 관내 여자 중·고등학교의 학칙(학교규정)을 살펴보면 학생의 복장을 규정함에 있어 속옷의 색과 무늬,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여,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.
- 또한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서는 학칙 제·개정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, 학칙 제·개정 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.

- 이에,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에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, 학칙으로 속옷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 사항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학교규칙으로 복장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함(안 제12조제2항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문장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166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학생인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습니다.
- 한편 동 조례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,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도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¹⁾

1) 제12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학생은 복장,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.

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,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- 이는 동 조례가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복장과 두발을 학생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,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²⁾
- 그러나 현재 일부학교에서는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, 양말,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.³⁾
- 예를 들어 서울시 관내 여자 중·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보면 중학교는 44교 중 9교(20.5%), 고등학교는 85교 중 22교(25.9%)가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규제 정도는 단순히 속옷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부터 속옷 착용 의무와 색상까지 규정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과도한 인권 침해로 판단됩니다.
- 이러한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학교규칙을 통한 복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.
- 참고로 교육부는 지난 2020년 2월 25일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여 학교규칙 기재 사항에서 ‘두발·복장 등 용모,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,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.
- 한편,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‘복장’을 ‘교복’으로 한정하여 “교복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4항4)의 절차에 따라 학교규정으로

2) 중·고등학교 교복 착용 비율(교육부 조사) : 2018학년도 98.3%, 2019학년도 97.6%

3) 보도자료 : 두발·복장·속옷까지 규제…“학생 인권 침해”(KBS NEWS, 2020.12.11.)

4) 제19조(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)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, 토론회, 공청

정할 수 있다.”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2275, 2021.2.17.).

-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이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동 조례에서 이미 ‘학생의 의사에 반하여’ 복장·두발 등을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,

굳이 서울시교육청의 의견과 같이 교복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조례 주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.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·개정안에 제12조,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(생 략)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,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u>다만,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2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. <단서 삭제></p>